

《2023. 8월 2차》  
**청렴메아리**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  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**관심**과 **참여**가 매우 중요합니다.



## 가족 채용 제한



### 관련 내용

#### ○ 개요

- 공무원의 가족을 특별채용 등의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

#### ○ 관련근거 : 「이해충돌방지법」 제11조제1항(가족 채용 제한)

공공기관(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·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「상법」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

1. 소속 고위공직자
2.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3.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4.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
#### ○ 상세내용

- 고위공직자, 인사업무 담당자, 산하기관 담당자가 소속 기관, 산하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
- (고위공직자)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,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
- (인사업무 담당자)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
- (산하기관 담당자) 산하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·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

### 관련 사례

-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그 산하기관의 감독부처 소속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도록 추천
- 중앙부처 공직유관단체에서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의 자녀를 부정 채용

#### 부조리 신고

- 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클릭)
- 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